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전문공보관 자장검사 이영장

전화 031-481-4302 / 팩스 031-481-4506

## 보도자료

2024. 9. 27.(금)

### 제 목

# MZ조폭 등 관내 폭력조직사범 다수 엄단 - 조직폭력배 및 그 추종자 25명 기소 (12명 구속, 13명 불구속) -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시흥·안산 지역에서 ① 흥기를 휴대하여 조직 간 세력 다툼을 하고 ②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자영업자 등 시민을 상대로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③ 규율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 등을 상대로 ‘뺨다’를 치고 ④ 조직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복을 가하는 등 다수의 폭력범죄를 자행한 조직폭력 사범 및 그 추종 세력 25명(12명 구속기소, 13명 불구속기소)을 엄단하였습니다.

※ 폭력조직원의 일방적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피해자에 대해 정당 방위를 인정하여 불기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였습니다.

- 안산지청 관내 주요 6개 폭력조직 중 □□식구파, △△원주민파 소속 조직원들이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간 다툼을 벌이는 등 조직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나아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까지 일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죄조직을 적시에 처벌하여, 세력 확장을 막았을 뿐 아니라 ‘MZ세대’로의 폭력조직의 세대 교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하여 조직범죄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와 중형 구형으로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 조직폭력 사범 대거 단속 경위

- 관내 주요 6개 폭력조직<sup>1)</sup> 중 코로나19 이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일명 □□식구파, △△원주민파 조직원들이 시흥·안산 일대에서 적대조직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력단체 활동범죄를 자행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원임을 적극 내세우며 금전을 갈취하는 등 각종 범죄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였습니다.
-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금년 2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9. 26.까지 폭력단체 조직원과 이에 가담한 추종세력 총 25명을 기소(12명 구속, 13명 불구속)하였습니다.

# 2

## 조직폭력사범 주요 기소 사례

### ① 폭력범죄단체 활동 범죄

- 시흥·안산 지역 폭력조직은 2010년대 초반까지 주요 조직원들이 다수 구속되어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코로나19 기간동안 SNS 등으로 20~30대 신규 폭력조직원을 대거 영입, 조직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 이들은 신규로 영입한 폭력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적대조직과 ‘전쟁’을 대비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잭나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여 적대조직원에 대한 폭력범죄를 일삼으면서 공개적으로 후배조직원을 상대로 ‘뺨따’를 치고 조직 내 기강을 확립하는 등 폭력단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적대조직간의 대치·폭행 사건, 후배 조직원에 대한 흉기 휴대 폭행 사건 등 폭력범죄단체로서 활동한 범행에 대해 경찰과 협력하여 다수의 폭력조직원과 그 추종세력을 엄벌하였습니다.

1) △△원주민파, ☆☆정릉파, □□식구파, ◇◇철산리파, ♣♣식구파, ♣♣세마을파

폭력단체	조직간 집단 난투 등 폭력조직 활동범행	비고
□□식구파	· 조직원 6명이 '22. 가을경 상계동 조직폭력배들과 '전쟁'에 대비하며 집단으로 대치하여 [폭처법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	▶'24. 7. 17. 6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24. 9. 26. 9명 불구속기소
	· 조직원 5명이 '23. 11. 2. ○○타이거파와 시비가 되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조직원들을 불러모아 '전쟁'에 대비하며 집단으로 대치하여 [폭처법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	
	· 조직원 4명이 '23. 12. 8. 숙소에 쳐들어온 양재동 조직 폭력배들과 '전쟁'에 대비하며 집단으로 대치하고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폭행하여 [폭처법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 조직원 1명이 '22. 12. 17. 후배가 처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목검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	
	· 조직원 1명이 '22. 12. 28. 하부조직원의 탈퇴를 막기 위하여 중간 기수 후배 조직원 2명을 골프채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	
	· 조직원 1명이 '23. 2.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	
	· 조직원 1명이 '23. 4.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의 배를 칼로 찌르려고 하여 [특수폭행]	
□□식구파	· 조직원 12명이 '14. 10.~'24. 1.경 시흥식구파에 가입하여 [폭처법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	▶'24. 8. 5. 12명 불구속 기소

## ② 타 폭력조직원 등과 연합한 폭력범죄

- □□식구파와 △△원주민파 조직원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받게 하여 갈취하는 등 타 조직원끼리도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離合集散을 반복하는'MZ조폭'의 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조직원들은 수사가 개시되자 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거나 신고자에 고소취소를 종용하며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법질서를 농락하고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대범함을 보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조직간 또는 추종세력과의 공모·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 규모를 키우거나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배들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폭력단체	타 폭력조직원 등과 연합한 폭력범죄	비고
□□식구파 △△원주민파	· 서로 다른 조직 소속인 폭력배 2명 및 추종자 1명이 '23. 8.~10.경 학교후배인 피해자 2명을 순차 협박하여 허위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대출사기,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갈취 등 범행한 후 그 대가를 갈취하고, 범행 중에 피해자 1명을 야산에 끌고 가 다른 피해자 등 앞에서 '뺨따'를 치는 등 구타하여 [폭처법위반(공동공갈) 등]	▶'24. 6. 4. <u>3명 구속기소</u>
□□식구파	· 조직원 2명 및 추종자 1명이, '22. 12. 17. 추종자의 데이트폭력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야간에 피해자를 불러내 문신을 드러내며 위협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등]	▶'24. 7. 17. <u>2명 구속기소</u> ▶'24. 9. 26. 1명 불구속기소

### ③ 시민 대상 폭력범죄

- 최근 20~30대 'MZ조폭'들은 문신을 드러내고 회합하는 영상과 외제차·명품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폭력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고, 시민을 협박하여 술값 등을 면탈하거나 이유 없이 폭행한 사실을 자랑하는 등 왜곡된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은 경찰과 협력하여 이유 없이 일반 시민에 상해를 가한 사건, 자영업자를 폭행·협박하여 술값을 면탈한 사건 등 시민을 대상으로 갈취·폭력을 일삼은 조직폭력사범 및 그 추종자를 엄단 하였습니다.

폭력단체	자영업자·일반 시민 상대로 한 폭력범죄	비고
□□식구파	· 조직원 1명이 '24. 1. 20.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하여 전치 10주 상당의 상해를 가하는 등 폭행하여 [상해] ※ 대항 과정에서 쌍방 폭행으로 송치된 피해자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죄가없음' 처분	▶'24. 5. 21. 1명 불구속기소 ※ 별건 강도상해 구속
□□식구파 △△원주민파	· 조직원 2명 및 추종자 1명이 '23. 8.~10.경 피해자 2명을 협박하여 허위대출신청·대포통장·대포유심 등 통해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 1명을 야산에 끌고가 '뺨따'를 치는 등 구타하여 [폭처법위반(공동공갈) 등]	▶'24. 6. 4. <u>3명 구속기소</u>

△△원주민파	· 조직원 1명이 '23. 12. 25.경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상위조직원을 욕한다고 오인하고 일반 시민을 위협한 물건으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	▶'24. 7. 15. 1명 구속기소
□□식구파	· 조직원 6명 및 추종자 1명이, '23. 3. 4. 경쟁유흥주점에 여직원들을 해고할 것을 강요하며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욕설하고 난동을 부려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24. 7. 17. 6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24. 9. 26. 2명 불구속기소
□□식구파	· 조직원 2명 및 추종자 2명이, '23. 6. 11.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욕설하고 난동을 부려 [폭처법위반(공동공간)]	
□□식구파	· 조직원 2명이 '24. 2. 14.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거울, CCTV를 손괴하고 업주를 구타하여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가하여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등]	

### 3 수사 결과 및 의의

#### 1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력조직의 세(勢) 확장 저지

- 조직범죄 전담검사는 수사 방향, 영장 신청, 구속 대상자 협의, 체포 계획 협의 등 수사 쏠과정에서 경기남부청 수사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과 협의하여 통신내역·조직원의 교도소 서신 압수·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입건된 범죄사실 외에도 조직 내에서 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 증거를 확보하여 조직원들이 수사에 대비하고 범죄단체의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조직범죄 전담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개진하여 일거에 6명의 폭력조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였습니다.

## ② 송치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폭력단체 구성원의 조직적 범행 전모를 밝혀내 폭력범죄단체를 무력화

- 조직범죄 전담검사는 송치 후 직접 수사로 조직원의 휴대전화, 수용 중인 조직원들의 접견대화를 분석하여 추가 조직원을 확인, 인지하여 기소 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폭력조직간의 대치·폭행 범행이 폭력조직의 비상집결체계 등에 따른 범행임을 확인하고, 범행 후 조직원들이 입을 맞추어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개별 범행이 조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폭력 조직의 위세·위력을 내세워 범죄단체로서 저지른 범죄임을 규명하고 신규 가입 조직원 다수를 검거하여 범죄조직을 무력화하였습니다.

## ③ MZ세대로의 조폭 세대교체 방지

- 2010년대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검거된 □□식구파는 조직재건을 위하여 2~30대 초반의 MZ세대를 영입하며 조직의 재건을 꾀하였고 그 과정에서 MZ조폭들이 일명 '新□□식구파'를 결성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성을 요하는 보이스포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제4세대 조직범죄를 발판으로 하여 MZ조폭들이 폭력조직의 주도 세력으로 규합하기 전 신속히 검거하여 조폭의 세대교체를 방지하였습니다.

## 4

### 향후 계획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엄정 대응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